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의안번호	→55
------	-----

제출년월일 2002. 4.
제출자 평창군수

□ 제안이유

-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
- 소비자권리의 보장에 관한 규정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 평창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

□ 주요골자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수정전 · 후 대비표

수 정 전	수 정 후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실무위원회) ④ 실무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자,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4조(실무위원회) ④ 실무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 실·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자,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료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나.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안전시책의 강구
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 방지대책의 강구
5. 소비생활 관련 주요 정책결정에 소비자의 의사 반영
6.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8.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대책 강구
9.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제1절 안전대책의 강구

제4조(안전대책의 강구) 군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시험검사)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주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해물품의 회수 등)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품 또는 용역을 회수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를 중지하는 등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해물품의 수거·파기명령 등) ①군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그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위해 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거하여 파기하는 공무원외에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절 부당거래의 방지

제8조(부당거래의 조사) 군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무경험·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시정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표시·광고 실태의 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가 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표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광고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광고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계량·규격 실태의 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제13조(피해구제 창구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구제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 행정처리·피해구제의 상담을 위하여 상담창구인력 1인 이상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창구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피해구제의 처리) ① 군수는 제14조에 의하여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험·검사 의뢰) 군수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피해구제의 기준)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피해구제 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자피해의 조정)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 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사례의 공표) 군수는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4절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지원

제22조(소비자의견 반영 및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을 결정하는 경우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책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은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3조(시험 및 검사요청) ① 군수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해당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물품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검사 시설의 설치·구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소비자단체의 등록)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그 등록부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6.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보조금의 지급) ①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7조(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비자단체 지원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결정·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조정
5. 기타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자치단체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 ①위원회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4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과 함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실무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 실·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실무위원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3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37조(검사 및 자료제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공표)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한 결과 사업자가 위반한 사항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

제39조(청문)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공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별 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과태료의 금액과 그 부과기준,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 소비자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 ③ 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신설 95.12.29>

제1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 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3조의2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의 강구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등
6. 기타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2조 (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

- ① 품목별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 ②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③ 품목별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④ 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이상 정하고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7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상황 및 재원확보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99.3.31>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2. 3개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 축산법

제2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 · 관리한다. <개정 99.9.7>
- ② 시장 · 군수는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 ·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8.8>
 1.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2.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하 "원양어업"이라 한다)